

환경관리질의응답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변경 신고

Q 1.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최초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기 신고된 폐기물종류 : 생활폐기물 1종)를 득하고, 추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되는 오니(용출시험결과 기준 이내) 및 폐흘착제가 발생되는 경우(각각 1일 평균 100킬로그램 미만) 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상기 내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4항2호에는 신고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변경신고 대상으로 명기 되어 있는바, 본 조항에 의거 추후 발생된 오니 및 폐흘착제(각각 1일 평균 1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당시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요령

Q 폐기물관리대장의 작성요령중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질의를 드립니다. 작성요령의 3.항을 보면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 배출자 중 제 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2, 제16조의 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일은 최초 보관하기 시작한 날짜와 처리한 날짜를 기재하고, 발생량은 처리시 계량한 양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예시〉 발생연월일 : 12. 11 ~ 12. 15, 발생량 : 17kg)”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고 위탁처리를 한다면 발생연월일을 매일 기재하지 않고 예시에서처럼 발생연월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량은 위탁처리(배출)시 계량한 양을 한꺼번에 계속해서 기재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최초 처리(배출)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A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16호서식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의 작성요령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하는자는 ②발생내역란의 폐기물발생 연월일은 최초 보관하기 시작한 날짜와 처리한 날짜를 기재하고, 발생량은 처리시 계량한 양을 계속해서 기재 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발생 연월일 : 12. 11 ~ 12. 15, 발생량 : 17kg)

감염성폐기물 소각로 개시신고시의 다이옥신 검사

Q 병원에서 기존소각로 95kg/hr소각로를 폐쇄하고 감염성폐기물 소각로 95kg/hr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질의1)이 때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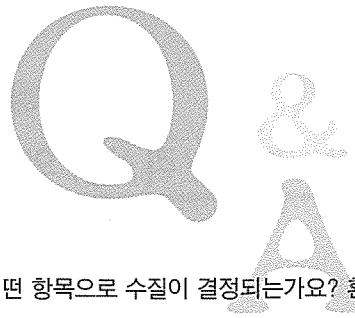
질의2) 다이옥신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개시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개시신고후 운영하며 년 1회 다이옥신검사결과를 보관하면 되는지?

A 질의1)자가소각시설인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설치승인(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시 다이옥신 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 하여도 되며, 다이옥신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의2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측정하면 됩니다.

재활용골재의 적치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Q 당사는 강원도에서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건설페기물을 파쇄하여 재활용 골재를 생산하여 아직장에 적치해놓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야적장에 재활용골재를 쌓아 놓은 것에 대해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등의 이유



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도 보면 재활용골재를 많이 사용토록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골재를 판매하기 전에 적치해 놓는 것이 불법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권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활용 골재를 적치해 놓는 것 이 합법인지여부와 거기에 대한 관련법규가 있다면 어떤 법 규에 의해 저촉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중간처리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 후 생산한 순환골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관방법, 보관량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않으나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예: 비산먼지시설 등)은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작성유무

Q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소각시설 0.6톤/시간 등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신설로 1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의 유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는 신규로 사업을 할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소각시설이 있는 중간처리업으로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의 유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A 동일한 사업장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Q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 3월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이 결정되었는데. 사업분야중 하천유지용수분야는 향후 재이용 수

질 권고기준안에서 어떤 항목으로 수질이 결정되는가요? 환경용수인가요? 아니면 현재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따르게 되는가요? 아니면 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나요?

A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는 처리장은 기본적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천의 건천화에 따른 유지용수 공급 및 하천기능 유지, 낚시 등 레크리에이션 활동 가능한 유지용수와 물놀이 등 인체에 직접 접촉 가능한 친수용수로 구분하여 재이용수질 권고기준을 금년내 마련할 계획이므로 동 권고기준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배출자의 인계서 서명

Q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8항에 의하면 “배출자” 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의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분리발주인 경우 발주자가 배출자인데 간이인계서 배출자 서명을 누가 해야 하며 책임감리나 시공사 현장소장이 해도 무관한지요?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의 배출확인은 폐기물배출자가 하여야 하므로, 발주자가 배출자인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간이인계서 확인은 발주자가 하여야 합니다.

소각로 사업허가권

Q 소각로 사업허가권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이 소각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허가신청을 어디에서 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 소각기의 크기에 따라 신고 하는 곳도 틀린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관리질의응답

사업소재지가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일 때 강서구청과 부산시청 그리고 환경청중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때 소각기 판매회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단지 소각기만 매도하고 제품의 품질보증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가. 소각시설 제작업체는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으며, 그 소각시설을 납품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나. 설치승인(신고)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인 경우 관할 지방환경청장에게, 사업장일반폐기물소각시설인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도금공정중 도금시설과 산처리시설 분리

Q 본 시설은 금속 도금업체로써 크롬도금공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며, 금회 니켈 도금 공정의 증설이 있어 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기존 크롬 공정은 산처리시설(황산이용)과 도금 공정이 세정집진시설 하나의 방지시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회 증설할 니켈 도금 공정도 위의 세정집진시설로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데, 도금 시설과 산처리시설을 분리하여 각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산처리시설중 염산을 사용하는 시설만 분리 처리하여야 하는지, 만약 분리 처리해야 한다면 기존시설은 어떡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제시내용의 니켈 및 그화합물, 크롬화합물, 황산화물, 염화수소의 오염물질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에서 공기비적용 대상물질이 아니며, 각 배출시설의 배출가스를 하나의 시설로 모을 경우 당초 오염물질농도가 회석되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시설별 배출가스량, 오염물질종류 및 농도 등의 자료를 갖고 허가(신고)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오니 재활용 가능여부

Q 건설현장에서 대기오염을 저감코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륜기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무기성오니로서 현장에서 성토재나 복토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배출자신고시 폐기물종류(건설오니), 처리방법(재활용)으로 신고하고 재활용하면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A 건설공사현장에서 세륜기에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페기물에 해당되고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페기물 중 오니에 해당되므로 함수율 85% 이하로 탈수, 건조하여 매립 처리하여야 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페토석으로 분류하여 재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기 방지시설 적산전력계 설치여부

Q 배출시설이 입자상물질저장시설(전분, 탈크, clay)이며, 저장시설 상부에 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처리계통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자상물질 → 호퍼에 투입 → 송풍기로 입자상물질을 저장시설로 이송 → 입자상물질저장시설에 저장 → 저장시설 상부에 여과집진시설 있음(여과집진시설에는 송풍기가 없으며, 단지 Solenoid 밸브가 작동하여 air로 필터에 붙은 입자상을 질을 털어 원료를 회수하는 구조임) → 배출구

질의1) 위의 계통도에 의하면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에는 Solenoid Valve를 작동시키는 것 외에는 동력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2005년 4월 15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에 적산전력계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적산전력계를 부착토록 하는 것은 대기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방지시설의 범주에는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펌프 등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 등이 모두 포함되



기 때문에 질문내용의 방지시설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Q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항목중 관리지역(세분화되어 기전에는 계획관리지역)은 10,000m² 이상일 경우 협의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10,000m² 이하라 하더라도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관리지역에서 10,000m² 이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10,000m² 이하인 개발행위도 대상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 관리지역에서 세분화이전까지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면적기준은 10,000m²이상이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2제2호 자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입니다.

악취 측정기록부

Q 악취 측정기록부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시료채취의 측정지점선정에서 “지점요약서술”과 “약도”를 작성하는 난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채워야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악취측정기록부상의 측정지점선정에서 “지점요약서술”란은 측정지점으로 선정한 지점을 기준으로 주변건물 등 환경을 기록하고, “약도”란에는 측정지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동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을 표시하면 됩니다.

수질자가측정대행업 수질분석범위

Q 자사는 수질자가측정대행업을 취득한 업체인데, 법규에서는 수질환경공정시험법에 의하여 하천, 호수 및 지하수 등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질의 1) 수질자가측정대행업은 수질환경공정시험법으로만 분석가능한지 아니면, 해양환경공정시험법에 의하여 분석을 하여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질의 2) 수질자가측정대행업은 하천, 호수, 지하수 등 육수만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수에 대해서는 해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하여 분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질측정대행업자는 하천, 호수 및 지하수 등의 수질을 측정분석하는 것인바, 해수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악취배출시설에 따른 방지 시설 준비

Q 당사는 소량의 페인트 작업을 위해 도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점검 결과 도장시설 크기 및 압축기 용량이, 대기배출시설에는 해당 되지 않다고 판정되어, 기존의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고필증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도장은 실내에서 소량으로 시행하므로, 외부로의 악취 발생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는 소량의 도장을 위한 시설에도,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방지시설(흡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현재는 먼지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류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A 가. 귀사의 도장시설은 질의내용으로 2005. 12. 31까지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만 사업장의 부지경계선과 배출구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반드시 흡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아울러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규모가 2005년 12월 중에 개정될 것인 바, 동 개정 사항을 참고하여 도장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악취저감 조치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